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계약학과 사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

■ 신영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339호)

2024. 7.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신영대 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11.
3. 회부연월일 : 2024. 6.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등을 위해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입학정원 미달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방대학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산업체 등과 연계한 계약학과등의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취업률을 제고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입학지원자를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지방대학과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등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대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영대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룰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지방대학과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등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의4(세제 지원) 정부는 지역 발전 및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대학과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계약학과등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1)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정

-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학과·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나 유사한 학과·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학생 선발기준의 공동 마련, 교육과정·교재의 공동개발 및 산업체등 인사의 교육 참여 등을 통한

원 외로 개설·운영할 수 있는 학위 과정 또는 학과임.

지난 2022년 7월 교육부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대책의 일환으로서 계약학과 규제 개선, 계약정원제 도입·운영 등을 제시한 바 있음. 그러나 당시 계약학과 의 수도권 쏠림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대책은 수도권 대학 과 비수도권 대학 간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되었음.

2024년 유형별 반도체 계약학과는 다음과 같음.

(‘24 대학정보공시 자료 참고/계약학과명에 ‘반도체’ 명시된 학과)

구분	채용조건형 ²⁾	재교육형 ³⁾	혼합	계
수도권	11개	13개	4개	28개
비수도권	8개	8개	4개	20개
계	19개	21개	8개	48개

동 법안은 지방대학과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에게 세제상의 지원을 제공하여 계약학과등의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조세특례제한법」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⁵⁾은 조세특례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② ~ ⑥ <생 략>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형

4)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 25. <생 략>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

를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개별 세법에서 규정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만 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법안은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간의 양극화 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적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는 조세 감면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바, 같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참고로 23년 2월 28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⁶⁾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기업이 지출하는 계약학과 운영비도 포함되었음.

교육부는 동 법안의 개정 취지에는 동감하나,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대학(수도권 대학 포함)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계약학과 운영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바, 추가 조항 신설 없이도 지방대학과 계약학과 등을 설치·운영하는 산업체 등에 동일한 혜택이 지원되고 있음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자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운영비로 발생한 비용

문 의 처
02)6788-5188

※참고자료 : 전체 계약학과 운영 현황

구분		2022 (개교, 비율, %)		2023 (비율, %)		2024 (비율, %)	
대학 수	수도권	89	40.6	92	40.2	91	38.9
	비수도권	130	59.4	137	59.8	143	61.1
	전체	219	100	229	100	234	100
학과 수	수도권	338	48.1	382	48.6	411	50.2
	비수도권	365	51.9	404	51.4	407	49.8
	전체	703	100	786	100	818	100
정원 수	수도권	9160	49.4	10050	51.6	10801	52.9
	비수도권	9397	50.6	9422	48.4	9608	47.1
	전체	18557	100	19472	100	20409	100
입학생 수	수도권	4861	51.2	5481	53.5	6012	54.5
	비수도권	4641	48.8	4757	46.5	5020	45.5
	전체	9502	100	10238	100	11032	100
산업체 수	수도권	4761	50	4983	49.6	5205	47.4
	비수도권	4765	50	5067	50.4	5770	52.6
	전체	9526	100	10050	100	10975	100

(2024. 대학정보공시 자료, '24.6.기준)